

진료재료 정규 단가계약 입찰 공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입찰공고 제2026-0568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03.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1. 입찰개요

- | | |
|------------|---|
| 1) 공 고 번 호 | : 2026-0568 |
| 2) 입 찰 건 명 | : [진료재료] REFLECTIVE SOFT MARKER 외 789종 |
| 3) 계 약 방 법 | : 일반경쟁 |
| 4) 품 명 | : REFLECTIVE SOFT MARKER 외 789종 |
| 5) 수 량 | : 불임 참조 |
| 6) 입 찰 방 법 | : 그룹별 단가총액입찰 / 품목별 단가입찰 (적격심사) |
| 7) 계 약 기 간 | : 2026.10.01. ~ 2027.06.30.
(단, 입찰 사정에 따라 계약시작일은 변경될 수 있음) |
| 8) 기 타 사 항 | : 진료재료 정규 단가계약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유의서, 품목리스트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1) 입찰(개찰)일시 : **2026.09.11.(금) 11:00**
- 2)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 **2026.09.10.(목) 15:00까지**
-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투찰기간) : **2026.09.09.(수) 09:00 ~ 2026.09.11.(금) 10:00**
- 4) 입찰설명회 :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며, 입찰품목리스트로 대체
※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물류자산팀 담당자에게 유선/방문 문의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5)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 6) 개찰장소: **병원물품조달시스템사이트 (이하 HLS시스템, www.snuhls.com)**

-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병원 물품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불가
 -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 2)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www.snuhls.com) 미가입 업체는 별도의 가입절차 진행 후 입찰참가 가능
 - 병원물품조달시스템 공지사항 게시판 참조 (가입신청서류 제출 후 승인기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
- 3)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1. 제출서류 (HLS 시스템에서 제출)

-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HLS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제출](#))
- 2)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 각 1부. ([HLS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제출](#))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5) 인감증명서 1부.
- 6) 사용인감계(해당업체) 1부.
 - ※ 우리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시스템)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업체는 3~6번 서류 제출 면제
 - ※ HLS시스템 신규 등록업체의 경우, 회원가입 서류 원본 제출
 - 우편 제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7층 구매계약팀
 - ※ 서류접수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제출분에 한해 인정됨
 -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 인감 날인 후 제출

4. 입찰보증금

- 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단가계약의 경우 단가에 참고수량을 곱한 총 금액)을 입찰 등록 마감 시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2)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병원에 전액 귀속되며 일정기간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 3)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5. 낙찰자 결정방법

- 1) **적격심사** 적용
- 2) 예정가격 : 단일예가
- 3)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 구매입찰**을 준용
- 4)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2.495%) 이상**의 최저가격을 제출한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낙찰하한율 미만 투찰시 탈락)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시에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 적격심사 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의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 5) 적격심사 서류 제출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제출통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해당되는 모든 서류를 일괄 제출해야하며 제출된 서류로만 적격심사 진행.
 - 접수완료 이후 통과점수부족이나 서류오류 등의 사유로 추가제출이나 보완이 불가
 - **적격심사 서류는 입찰공고일까지 발급 받은 자료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 6)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가 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6. 입찰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7. 기타사항

- 1) 본 입찰은 우리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 www.snuhls.com)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HLS시스템에서 ID를 부여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 2) 본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 3) **입찰품목내역서의 보험상한가 금액은 2026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함**
계약 시작 전 보건복지부 환율고시 적용 등에 따라 변경계약이 이뤄질 수 있음.
- 4) 유찰시에는 1시간 후에 재입찰 할 수 있음
- 5) 입찰참가자가 서울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등 포함)에 소속된 직원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의 사적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은 소속 병원 감사팀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절차를 진행하여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법적인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음
- 6) 입찰참가자는 ①입찰유의서 ②청렴계약이행서약서 ③조세포탈유무확약서 ④관련법 및 병원회계규정 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함.
- 7)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계약관련 : 구매계약팀 이혜리(☎031-787-1396)
 - 물품관련 : 물류자산팀 재료관리파트 위생, 기타진료재료 담당 최승민(☎031-787-1326)
물류자산팀 재료관리파트 특수진료재료 담당 황예지(☎031-787-1327)
물류자산팀 재료관리파트 치과재료 담당 손고은(☎031-787-1325)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계약담당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하“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당사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거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하는 사항

2. 당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없으며, 관련한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제한 등 병원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유 의

상 호 :

대 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